

정정신고(보고)

2026년 9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3.20
3. 정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	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5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	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8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 원까지 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나. 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 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거주 자 1명당 연 2천만원까지 에 대해 투 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 서 (제2부 집합투자자기구에 관한 사항 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나. 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 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주요투자위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의 매수 및 보유기 간 등)</td><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 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 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5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 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 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td></tr></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의 매수 및 보유기 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 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 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5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 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 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의 매수 및 보유기 간 등)</td><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 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 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8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 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 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td></tr></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의 매수 및 보유기 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 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 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8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 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 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의 매수 및 보유기 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 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 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5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 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 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의 매수 및 보유기 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 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 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8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 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 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합계액으로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액으로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주식: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4)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등: 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1)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주식 매입에 의한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가. 투자대상 1) 주식: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4)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등: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추 가) ※ 4)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4)의 요건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까지(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6개월 내로 함) 및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6개월간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자대상 비율의 적용은 4)의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부터 매6개월마다 같은 호 본문 및 부분 후단에 따른 따른 비율을 매일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	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4)의 요건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까지(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함) 및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간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자대상 비율의 적용은 4)의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 (삭 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td><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td></tr></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나. 특수위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td><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td></tr></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 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의 매수 및 보유기간 등)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5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원 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 매수 및 보유기간 등)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8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 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거주자 1 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거주자 1 인당 투자액은 연 2천만원)
	감면세액 추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추 가)	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